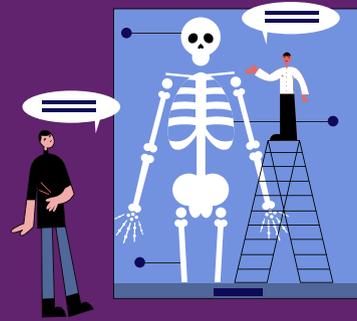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현장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글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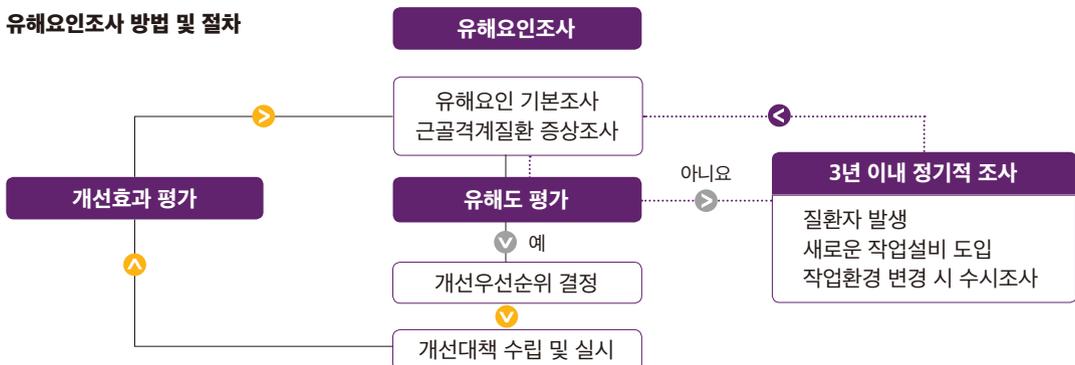
Q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진행에 앞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신규 보건관리자를 위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A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했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는 수시로 유해요인을 조사해야 합니다.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만, 동일한 작업형태와 동일한 작업조건인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존재하는 경우, 일부 작업에 대해서만 단계적 유해요인조사를 수행합니다. 유해요인조사는 크게 유해요인 기본조사와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유해요

인 기본조사표 양식과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양식을 사용합니다. 나아가 유해요인 기본조사와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결과 추가적인 정밀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작업상황에 맞는 인간공학적 정밀평가(작업분석·평가)도구를 활용해야 합니다. 유해요인조사 결과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개선대책 수립 및 실시 등의 절차를 추진해야 합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11대 부담작업 유무 확인뿐 아니라 증상설문조사 결과 관리대상자와 통증 호소자를 구분한 관리와 근골격계질환을 정밀분석해 사전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3년마다 정기평가가 이루어지기에 유해요인 관리대장에 기재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평가 관리의 연속성을 지니면 문제점 개선 파악이 더욱 수월합니다. 🍀

유해요인조사 방법 및 절차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 제1호 및 제65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2018. 2. 9. 신설)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제4조 유해요인조사 방법 관련)

I. 아래 사항을 직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연령	만	세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현 직장경력	년	개월째 근무 중
작업부서	부 라인 작업(수행작업)	결혼 여부	<input type="checkbox"/> 기혼	<input type="checkbox"/> 미혼
현재하고 있는 작업 (구체적으로)	작업 내용 : 작업 기간 : 년 개월째 하고 있음			
1일 근무시간	시간 근무 중 휴식시간(식사시간 제외) 분씩 회 휴식			
현재작업을 하기 전에 했던 작업	작업 내용 : 작업 기간 : 년 개월째 하고 있음			

- 규칙적인 여가 및 취미활동을 하고 계시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한 번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적어도 2~3회 이상)
 게임 등 컴퓨터 관련 활동 피아노, 드럼셋 등 악기연주 뜨개질, 붓글씨 등
 테니스, 축구, 농구, 골프 등 스포츠 활동 해당사항 없음
- 귀하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밥하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2살 미만의 아이 돌보기 등)은 얼마나 됩니까?
 거의 하지 않는다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 귀하는 의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병에 대해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해당 질병에 체크)
 (보기 : 류머티스 관절염 당뇨병 루프스병 통풍 알코올중독)
 아니오 예(현재 상태는? 완치 치료나 관찰 중)
- 과거에 운동 중 혹은 사고(교통사고, 넘어짐, 추락 등)로 인해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다리·발 부위를 다친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예(상해 부위는?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다리·발)
- 현재 하시는 일의 육체적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전혀 힘들지 않음 견딜만 함 약간 힘들 힘들 매우 힘들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 '인간공학적 정밀평가 도구' 확인

자료 : 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관리자 여러분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과 궁금증을 보내주시면 관련 전문가가 자세히 답변해드립니다.
 60P <독자의 소리>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세요.